

대학언론의 합리적 운영체제

유 일 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대학언론의 합리적 운영체제는 대학언론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언론이 작동하는 사회적 틀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려면 먼저 대학언론의 경제적 토대인 대학 미디어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분석, 즉 대학언론의 자본과 대학 언론인의 능력 및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관계와 정치사회적 지배-복종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대학언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기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규명한 후에야 비로소 그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언론이란 학술신문이나 교지 등의 잡지 및 단행본의 출판이나 방송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대학언론은 대학이라는 특정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전문적인 미디어의 활용을 의미하는 바, 대학의 교육적 기구, 제도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계열에 소속된 기구가 공표하는 출판물과 방송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에는 대학신문과 대학의 교지 등을 비롯하여 대학의 각종 정기간행물은 물론이고 대학방송도 포함된다. 대학을 하나의 기관으로 볼 때, 대학언론이 기관언론(house organ)의 하나인가 아니면 자율적인 언론기관인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인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학의 주체인 교원, 직원, 학생은 모두 대학언론의 주체로서 소수의 발신자나 다수의 수용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대학언론 매체를 통해 의견과 사상,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조교, 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교원은 물론 임시직원, 직원, 계장(주임), 과장, (부)처장의 직책을 가진 교직원들은 조직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대학언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 매체가 기관언론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언론이 더욱 강력하게 피교육자인 자신들의 의견, 사상과 신조, 학문과 예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진리의 탐구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과의 교류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발전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이기를 바란다. 대학주체간의 대학언론에 대한 상반된 기대감이 대학신문으로 하여금 대학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현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학언론의 발신자와 수용자 간에는 대학언론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의 정도가 지극히 낮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학언론 자체가 그 특성을 분명히 하는 뚜렷한 징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대학언론을 객관적 대상으로 고찰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혼란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언론의 성격을 재검토해 보고 현재 대학언론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대학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지도'의 문제나 편집권(또는 편성권)의 한계를 차례로 짚어 본 다음 하나의 작은 제안으로서 대학언론의 운영체제 개선방향을 내

놓고자 한다.

2. 대학언론의 성격, 기관언론인가? 아닌가?

대학언론이 하나의 기관언론일 때, 대학신문과 교지는 대학의 기관지(紙·誌)이고 대학방송은 대학의 홍보기관이다. 이 때 대학언론은 대학내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망으로서 또한 대학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그 첫번째 사명을 갖는다. 이 사명에 따르면, 대학언론은 대학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전문언론이 된다고 하겠다.

대학의 전문언론으로서 대학언론은 더욱 확실하게 대학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인 계층으로 이루어진 더욱 전문적인 정보원(sources)으로부터 입수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 노하우 등을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정기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매체들과 그에 게재되거나 그 매체들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다. 이 내용들은 고도화된 지식으로서 대학 각 부분의 의사결정권자와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적시에 배포됨으로써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언론은 그 특수성에 발맞추어 전문언론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성인을 교육하는 일, ② 대학의 연구·교수, 시설, 인사 등과 관련된 대학뉴스를 보도하는 일, ③ 대학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평을 행하는 일,

④ 대학과 관련된 각종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일, ⑤ 대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공중-교수·직원·학생 외에도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언론 보도기관, 학부모와 동창회원 및 입시생 등-에 대해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당해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 ⑥ 대학언론의 독자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요한 문제와 쟁점에 대해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취재하여 제시하는 일, ⑦ 이와 같은 개별적인 기능을 통합하여 대학사회의 전문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이 때 대학언론은 공공의 신탁에 근거하여 대학내 각 부문간의 상호의존성과 각 부분이 하나의 완결된 사회적 단위로서 활동하도록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한 대학이 다른 대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수용자에게 인식시키고, 수용자 각 개인이나 대학내의 각 부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가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대학언론은 항상 하나의 전문언론이 아니라 자신이 위치한 환경과 경우에 따라 지역과 결합하여 지역언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동일세대의 전전한 양식을 대표하여 언론개혁의 전범(典範)을 보일 수도 있다. 때때로 대학언론은 권언유착이나 권력·언론·자본의 유착을 파괴하는 대체언론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지식과 정보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성·발전하는 대학언론은 사회일반의 언론을 위해 새로운 정보와 대안을 제공할 수 있고 사회의 경직화(硬直化)와 정체(停滯)를 방지할 수 있게끔 좀더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언론은 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사회언론의 일반성과 보편성에 결합시키는 촉매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의 눈이요 귀이고, 입이며 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언론은 대학의 살아 움직이는 운동을 예측할 수 있고 현재의 정세를 판별해 줌으로써 매일매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학 내·외의 환경과 생동하는 관계를 맺어 대학생활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불가결의 도구가 된다. 대학의 신문, 잡지, 방송이 없다고 해서 대학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언론이 없을 때 대학 내·외부에서는 투서와 유언이 난무하고 대학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물리적 힘의 적나라한 지배에 굴복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언론이 대학이라는 특수조직의 수직적 의사소통로나 수평적 대화통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언론이 대학이라는 유기체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때, 대학의 생명을 대학 내·외부에 발현하고, 대학과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언론의 고유한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대학사회의 끊임없는 생동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며, 나아가 대학언론 자체의 존립에 필요한 확신을 대학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학언론은 대학의 하부체계인 기관언론이 아니라 대학을 이루는 하나의 가장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하위구성체체로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언론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에서 대학의 언론관계

보직교수와 대학의 책임자들은 대학언론을 대학의 홍보도구나 뉴스발표기구로 한정하여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대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그에 따른 특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특성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장점으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를 존중하는 대학은 주류의 사회적 가치체제나 기성의 대학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언론을 용인할 만큼 너그러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학에서는 대학언론의 일부 여론지도층에 의해 장악된 자유가 대학인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고, 현재 대학언론이 안고 있는 편협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며, 왕성한 실험과 치열한 고민을 결합하여 사회와 자연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새시대로 대학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언론의 정치경제학적 특수성과 문제점

대학언론의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타산하는 데 있어서 대학언론의 성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대학언론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현행 대학언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관찰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진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인 정치체제와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다. 대학언론

의 경제적 토대는 대학언론의 존립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노동력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대학행정 당국과 대학언론의 제작에 참여하는 대학 언론인들의 능력 및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설립된다. 현재 대학언론의 운영자금은 전적으로 대학당국의 예산·결산 기능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대학언론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언론의 운영자금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다가 대학예산 당국의 통제와 조절을 거쳐 대학언론기관에 분배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에는 그 재원 중에 약간의 광고료 수입도 있겠지만, 광고료만 내면 어떤 광고라도 거의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일반 신문과는 마땅히 다른 대학신문의 특수성 때문에 게재되는 광고의 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신문의 광고료는 광고시장의 가격결정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대학언론의 운영재원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당국에 의해 지원되므로 대학당국의 의도 여하에 따라 대학신문의 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대학언론의 제작에 참여하는 대학언론인은 대개 피교육자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간교수의 감독과 대학언론기관에서의 행정실무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신문·잡지·방송 등 미디어에서 각각의 내용 결정과 메시지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체로 대학생들이라는 말이다. 대학원생이 더러 대학생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을 하거나 좀 더 상위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3~4학년 학생을 책임자로 하여 2~3학년 학생들이 취재·보도·편집·제작에

종사하고 있으며 1학년 학생들은 주로 견습과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언론생산물의 제작에 참가한 대가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의 감면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에 대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방송학과 재학생이 아닌 한 그들의 언론 제작업무는 그들의 학업과 직결된 것이 아니며, 한 학기에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된 현행 대학제도에 비추어 그들의 학업성적은 대학언론인의 직무에 대한 충실도와 반비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언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교육도구라고 믿는다면, 대학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더욱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자신들의 의사소통기구라고 믿는다. 대학당국과 대학언론인의 이러한 신념 불일치가 대학당국과 대학언론인 사이에 위치한 주간교수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자신의 정체(identity)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학언론의 미디어 생산물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대학당국의 기성제도에 대한 확신이 제아무리 두텁다고 하더라도 대학당국의 통제력이 완전 무결하게 미칠 수 없고, 미쳐서는 안 되는 학내 언론기관에서 대학언론인의 자유를 향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 주간교수의 역할 갈등은 학생지도의 업무와 편집총책의 업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4. 주간교수의 지도범위

교육학에서 지도는 학습의 수단이거나 때

때로 학습활동 그 자체이다. 학습은 피교육자가 덜 성숙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교육자인 학생이 학습준비를 갖추고 학습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있을 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때 학습지도를 이끄는 교수자가 학습지도의 환경에 알맞은 교수방법을 선택한다면, 피교육자에 대한 학습지도의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지도는 교수자가 피교육자의 능력과 흥미와 욕구에서의 개인차를 파악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자기실현을 위해 최선의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대학언론의 지도는 언론학을 연구·교수하는 사람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학생에 의한 대학언론의 독점이라는 또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대학언론인들은 이러한 전문적 지도를 받을 만한 기초지식도 없으며, 지성의 면에서 미성숙하고, 전공하는 교과목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통일될 수도 없고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이 통일은 곧 획일화이며 대학의 다양한 가치추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즉, 대학언론인들의 능력과 지능, 흥미와 욕구가 획일화되어 있다면, 대학언론에 대한 대학당국의 지도도 획일화될 수 있으므로 대학언론인은 다양한 접근을 통한 창의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대학언론인도 사회일반의 언론인처럼 전공과목도 다양하고, 지적 능력과 취향도 다양하므로 그들의 매체도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발양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언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운 발현 및 의견과 정보의 막힘없는 교류를 통해 좀 더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보편적 목적과 더불어, 특수 전문분야에서 고도의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숙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인들은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 내지 교수할 수 있는 자유'(헌법재판소 결정 89헌바 88)를 가지며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매개체로서 대학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해와 공감을 통한 공론의 마당으로서 대학언론에서의 자유는 교수자의 자유로운 연구와 교수의 자유 그리고 수업의 자유를 통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진리탐구활동의 성과를 외부에 전달하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언론은 자기통제 이외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말아야 하며, 대학에서의 잘못된 실험결과가 사회에 알려져 선의의 제3자를 해치는 경우가 아닌 한,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활동인 바, 대학언론에 대한 교수의 지도는 학습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언론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다름아닌 것이다.

강경근 교수는 "대학의 자유란 대학의 학사·교수 등의 운영에 대한 국가나 설립재단으로부터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그 자주적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교수와 학생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진리탐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역시 학문성을 전제하는 학문자유의 주체로서 그 학문적 활동도 당연히 대학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7, 832쪽)고 밝히고 있

다. 대학언론의 자유는 대학에서의 학문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교수와 대학생에게 마련된 공개된 마당의 자유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언론에서 주간교수가 행하는 지도의 범위는 중·고등학교의 그것과 크게 구별된다. 대학언론은 주로 교수와 대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공표하고, 비판받고, 이에 재론을 거듭하면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나가는 공개장(public sphere)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 기능이 대학홍보기능이나 대학정보의 교류기능보다 우선하여 대학언론이 감당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요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언론을 담당하는 주간교수의 임무는 대학언론의 여러 주체들 간에 제기되는 갈등의 조정자를 겸하면서 사실은 대학언론의 제작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상징적인 미국 판례 하나

이제는 한 번쯤 대학언론의 제작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한 법률적 문제들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검토할 차례다.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 대학언론의 지도범위를 둘러싼 판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학의 자유 가운데, 그 핵심이 학문의 자유이고 그 발현이 대학언론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한 공표이며 불법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언론·출판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여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대학언론에 대한 지도를 운운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어불성설일 것이다. 또한 미국 대

학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언론이 이미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매체로서 자리잡았고, 대학언론인도 일반 사회인과 같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기된 바 있고,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남겼으니 이를 먼저 분석해 본다.

Hazelwood 학교 사건의 판례(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484 U.S. 260. 1988)는 교육자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고등학교 신문에 대해 편집상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5:3의 다수결로 학교당국이 교육적 차원에서 고등학생들의 표현활동과 언론의 자유에 일정한 통제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판례는 반전의사를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했다고 하여 정학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 학교장의 처분을 위헌으로 인정하고 정학을 무효화 했던 Tinker 사건의 판례(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393 U.S. 503. 1969)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상당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Tinker 판례는 ① 상징적 언론행위의 영역을 헌법상의 언론자유로 승인해 준 점, ② 완장착용이 학교구내에서의 어떤 협박이나 격렬한 행동을 야기하는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③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데 참고될 만한 판례라는 의미에서 Hazelwood 사건의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zelwood 고등학교는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군(郡)에 소재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언론학 II (Journalism II) 교과목의 교육과정 속에서 *Spectrum*이라는 신문을 3주일마다 약 4,500부씩 발행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일원에 배포하고 있었다. 이 신문의 발행경비는 총 5,835.34달러인데 그 중 학교당국이 80%(\$ 4,668.50)를 부담하고 광고료 수입으로 20%(\$ 1,166.84)를 충당하였다. 1983년 5월 13일자 신문발행에 즈음하여 학교장이 이 학교신문에 게재된 두 가지 기사에 대해 삭제 처분을 내리자 학생 편집장인 Cathy Kuhlmeier는 교장의 처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학생기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문제의 두 기사 가운데 하나는 여학생 3명의 임신 체험담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이혼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교장은 임신 체험담의 기사에 대해서는 비록 별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 명의 여학생은 신원이 확인될 수 있고 성적행위(sexual activity)와 피임에 대한 언급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기사의 이면에 실린 이혼 관련 기사 역시 부모의 이혼을 비판하는 학생의 주장이 그들의 부모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게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교장은 마감시간에 쫓겨 이 두 기사가 실린 2쪽을 삭제하여 발간했던 것이다.

둘째, 재판과정을 보면 제1심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5:3

의 다수결로 교사의 기사 삭제가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수결이었다는 점이다. 법정의견을 구성한 White의 판결에 동조한 판사는 Rehnquist(대법원장), Stevens, O'Connor, Scalia 등의 보수적 인물들이었고, 진보파 판사인 Brennan, Marshall, Blackmun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보장이론에 따라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법정의견을 요약해 보면, “① 수정헌법 제1조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일반성인의 경우와 동등하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신문이 공립학교의 설비라고 하더라도 학교당국이 일반공중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forum)으로 간주했을 때에 한해서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학교 당국자가 학생, 교사와 기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발언에 합리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학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범위에 대한 유추해석을 해보면, ① 신문방송학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닌 현행 대학언론 활동은 대학이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자 일반공중을 위해 열어놓은 공론장으로 볼 수 있다. ②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성인이므로 일반인이 누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 ③ 대학언론의 자유는 대학의 사명인 진리를 발견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④ 대학의 언론활동이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전투적인 언사이거나 사회적 보상의 가치가 없는 음란표현에 한하여 대학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단히 제한적인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학언론의 경우에 주간교수는 발행인인 총장의 위임에 따라 대학언론의 편집·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주간교수는 윤리적으로도 대학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생지도의 차원에서 대학언론인을 지도할 수 있다. 이때의 학생지도는 언론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아닌 한, 일반적인 교육활동과 같은 것으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동일한 주체로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거나 과오나 단점을 바로 잡아 주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주간교수의 더 중요한 임무는 대학언론인을 선발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총장을 대신하여 주간교수는 대학언론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대학언론인과 주간교수의 이와 같은 법적 관계는 대학사회의 윤리적 관행과 상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언론인이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물질경제적 배상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언론활동을 자유의 이름으로 남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주간교수는 대학언론인에게 민사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예컨대, 보증보험 등)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기자의 편집권은 주간교수의 신조에 따라 공유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불법적 언론행위가 발생하면 우선 총장과 주간교수가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학생기자(대학언론인)는 인식해야 한

다. 총장과 주간교수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배상을 해 줌으로써 발행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다시 대학언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대학 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대학신문의 편집권은 주간교수와 대학언론인 간에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 대학언론의 합리적 운영체제

우리의 대학언론은 한 때 학술논문지 수준에 머무는 대학신문과 교지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받았고, 대학방송은 빈약한 시설에 실험실습 도구로서 기성방송을 맹목적으로 모방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좌경이념의 온상이니 선동매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문교행정당국의 원심력에 의한 대학당국의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민주언론의 향도자 노릇을 맡기도 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학교 쪽을 대변하는 주간교수와 학생 쪽에 선 학생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었고, 일부 학생들도 학보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견해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일부 학생들이 대학언론에 무관심하고 사회 전체의 운동성에 둔감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학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대학교 다신문제(多新聞制)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대학언론에 관한 오늘의 논의도 무성한 의논들의 연장선에서 21세기 선진 대학언론의 위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노력의 일환이라면, 대학언론 체제에 대한 합리성을 간추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이 다소나마 실용성이 있을 듯하다.

첫째, 대학언론은 대학생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학생은 고등학생과 달리 진리를 찾아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고,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표현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므로 이들을 대학당국의 권위와 주간교수의 성향에 복종시켜 대학언론의 메시지 내용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둘째, 대학언론의 메시지 내용이 ① 친정부적인가 반정부적인가, ② 체제친화적인가 반체제적인가, ③ 학교의 홍보목표와 일치하는가 어긋나는가에 따라 차별적인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학당국은 대학언론이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대학당국의 지휘와 감독을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자기변호를 할 수 있고 자기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하다.

셋째, 대학당국은 주간교수를 선임할 때 대학언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언론이라면, 그 편집 책임자인 주간교수는 시민사회의 언론기관에서 주필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간교수는 단순한 보직교수가 아니라 대학언론인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임명권자가 일정한 임기를 정하되, 최소한 3배수로 대학언론인이 비밀추천하는 교수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은 대학인사의 비밀을 유지하되, 대학언론인의 집단인사를 존중하고 편집권의 공유에 따른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유익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간교수는 대학언론의 편집 책임자 또는 편성 책임자이지만, 대부분 학생으로 이루어진 대학언론인을 포용하고 기사

취재와 보도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간교수는 자기의 감독 아래 있는 대학언론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법제에 대한 연수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대학언론인이 대학언론의 매체를 이용하여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지말게 하고, 동료 학생들에게도 음란하고 저속하며 말트집을 잡는 언행(fighting words)을 삼갈 도덕적 수양을 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된 언론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주었을 때는 발행인인 총장이나 주간교수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 후 기자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대학언론인은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술연구의 본산인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학언론이라는 공론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대학신문에서의 다양성 포기는 대학신문의 자율과 탄력을 둔화시켜 오히려

독자들을 잃을 수 있으며, 지나친 객관보도나 중립성이 대학신문의 특수성을 잃고 일반사회언론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획일화를 가져와 대학의 사명과 대학언론의 기능이 배치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방송이 정제되지 않은 대중문화를 복제하는 데 급급하거나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볼륨을 높게 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울 때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방송청취 거부반응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대학언론이 대학 그 자체의 존재목적을 승인하고 합리적인 언론활동을 도모할 때, 대학언론은 모든 대학인의 애호를 받으며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만큼 갱신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일상/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보도국 기자,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를 지내고, 현재는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벌거벗긴 한국언론』, 『매스미디어와 열린 세상』, 『사랑과 방송』 등이 있고, “국가 위기상황과 보도의 자유”, “언론법제연구의 성격과 방법”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